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. 11. 11.(수) 증선위 회의 후

미공개 무상증자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등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고발·통보 조치 의결

-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(11.11.) 의결 -

[조치 개요]

증권선물위원회(위원장: 신진창)는 제20차 정례회의('26.11.11일)에서 벤처투자회사의 대표이사·동사가 투자한 회사 및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 **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**로 **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·통보 조치**를 **의결**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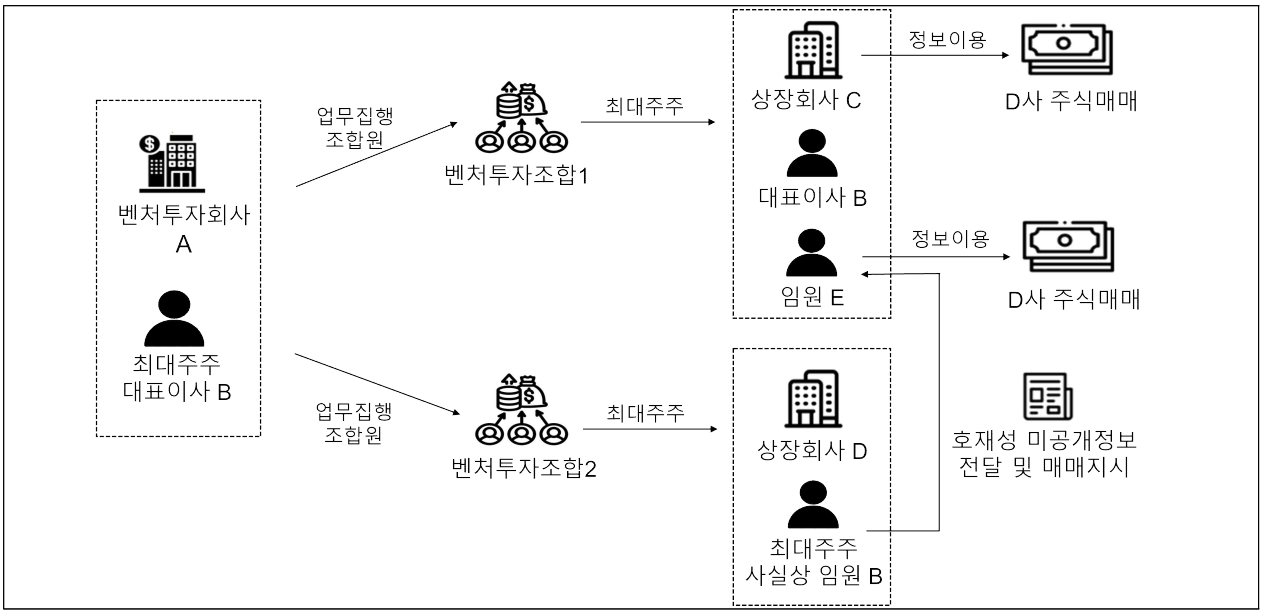
◈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**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**는 **내부자**가 **상장법인**의 **업무 등**과 **관련**된 **미공개중요정보**를 **특정증권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**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(자본시장법 §174①)를 말합니다.

[조사 결과]

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는 A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이자 C사의 대표이사이며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**사실상 임원**으로서, D의 **무상증자 결정**이라는 **호재성 정보**를 **생성**하고, 해당 정보 공시전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에게 **C사의 계좌**로 **D사 주식**을 **매수**하도록 **지시**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.

또한, E는 B로부터 **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**하여 본인의 계좌로 **D사 주식**을 **매매**함으로써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.

< 사건 개요 >



[유의사항]

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사실상 임원 등 **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전 이용**하여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**1년 이상의 유기징역** 또는 **벌금**(부당이득의 최대 6배)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당 내부자의 행위의 결과가 내부자가 속한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**미공개중요정보**를 **이용**한 **자본시장 불공정거래** 행위에 대해 **엄정**하게 **대응**해 나갈 예정이니, **관련 법규 준수**와 **내부통제 강화**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<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>

☞ **금융위원회**

- 인터넷 :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[참여마당 → 신고마당 → 불공정거래신고] 메뉴

☞ **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**

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[민원·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→ 증권불공정거래신고] 메뉴
- 전 화 : 1332

☞ **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**

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http://stockwatch.krx.co.kr)
- 전 화 : 1577-0088

※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.
본 조치 사안과 관련한 문의는, 금융감독원 조사2국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종식 (02-2100-2600)
		담당자	서기관	김영민 (02-2100-2579)
	금융감독원 조사2국	책임자	국 장(대행)	형남대 (02-3145-5653)
		담당자	팀 장	김시림 (02-3145-56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